

# 2019년도 제1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12.(월요일), 14: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718건(안전번호 제 2019-89685호~90854호)
  - 회의결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정권고 여부, 심의위원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복제·전송자를 발견한 경우 보호원에 고발조치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함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1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모두 공개하고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2019-89685호~90854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718건임  
안전번호 제2019-8968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라인 링크(inlining link)를 통해 웹툰 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인라인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를 링크제공자의 프레임 내에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프레임 링크(framing link)와 같지만 링크가 이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점에서 프레임 링크와 다른 인라인 링크의 경우 웹사이트 이용자가 링크된 정보의 위치는 물론 링크가 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2019. 8. 12. 현재 동일 사이트 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총 35개의 '웹 위치 정보'가 있는데, 이용자는 각 위치정보를 클릭하여 연결되는 웹페이지에서 인라인 링크를 통해 심의대상 게시물의 웹툰 제1화부터 제36화까지(35화는 제공되지 아니함)를 이용할 수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89685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시연 중인 화면을 가리키며)지금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사이트 내 웹페이지에서 웹툰 34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대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하단을 보여주면서)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목록이 '게시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판 정지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원이 게시판 정지의 시정권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임  
 그런데 이용자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목록에 문자,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게시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C 위원 :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웹툰' 카테고리에 게시물 작성 권한이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이트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하더라도 '웹툰' 카테고리에 게시물 작성 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이트 운영자를 위하여 서버공간을 제공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호스팅사업자는 저장서비스  
제공자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도판 서비스  
제공자인 '★★★★ ★★★★★'와 도메인 판매사이트 '○○○○○○○  
○○○○○'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권한이 없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웹툰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는 만화  
로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웹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게시  
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확인할 수  
가 없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안타까움
- 성원영 전문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  
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  
하고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A 위원 : 웹툰 복제물의 이용자 측면에서 다시 시연해 달라고 요청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사이트 메인화면의  
검색기능에서 웹툰명을 검색하면 '웹툰' 카테고리 내 심의대상 게시물  
이 나옴  
심의대상 게시물 화면에는 동일 사이트 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총 35개의 '웹 위치 정보'가 있으며 이용자는 각 위치정보를 클릭하여  
연결되는 웹페이지에서 인라인 링크를 통해 한 화 전체분량의 웹툰을  
이용할 수 있음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웹툰에는 워터마크로 다른 사이트의 주소와 이름이 노출되어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F12 버튼을 눌러 웹사이트의 소스 보기를 하면 불법복제물 웹툰을 제공하는 또 다른 사이트가 확인됨

소스 보기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이트에서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검색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웹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인데, 웹서버에서는 요청자가 요청한 사항에 따라 D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와 화면을 재구성을 하여 맞춤형으로 보여줌

심의안건 게시물 또한 원 사이트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불러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원천 불법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 수 없는 조직적인 체계에 의해 불법콘텐츠 게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웹호스팅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과거 시정권고 사례에 대하여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웹호스팅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정권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실관계는 다르나 제2분과위원회(제2019-56회 심의)는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서비스 삭제 또

는 전송중단 권한이 있는 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음

- A 위원 : 대부분 심의 사례는 C2C로 볼 수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업형 저작권침해로 B2C에 비유할 수 있음  
콘텐츠에 찍혀 있는 광고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복제물을 관리, 공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듦  
예컨대 지난 제3분위원회(2019-131회)에서 영화 ‘알라딘’ 복제물의 경우 대부분 재생화면에 “☆☆☆☆☆.☆☆☆” 마크가 삽입되어 있었는데 본 건도 비슷한 경우로 보임
  
- C 위원 :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권고서를 발송을 위해 보호원에서 먼저 유선으로 연락을 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6는 서면으로 시정권고를 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신속한 업무처리와 자원 절약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전자우편 송달 동의서를 받은 후 전자문서로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유선 및 이메일로 사전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는 사이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아웃룩(outlook) 주소가 전부임
  
- C 위원 : 사이트 개설 시 웹호스팅사업자를 통해 개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웹호스팅사업자의 정보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는 도메인 판매사이트 '○○○○○○○ ○○○○'을 통해 개설을 한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즈 검색 시 웹호스팅사업자의 정보 등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특정이 되지 않음  
 보호원에서 민원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가결이 되었는데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안내를 해야 하는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알 수 없어서 부결이 되었다고 안내를 해야 하는지 조심스러움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즉 성명 불상자에 대한 시정권고 가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가결한 사례를 보면 웹호스팅사업자가 특정되는 경우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 올린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부결이 된다면, 소송으로 치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인데,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려운 외부에서는 심의위원회가 무슨 의도로 부결하였는지 오해할 여지가 큼
  
- C 위원 : 만약 부결로 의결된다면 민원인에게는 부결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음
  
- B 위원 :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복제물등이 아니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음  
 보호원의 심의요청 부서에 보호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전달되

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보호심의팀 소속의 각 분과 담당자는 심의 요청부서에 심의 결과, 이유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전달하고 있으며, 민원 답변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은 이메일과 별개로 구두로 전달하기도 함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답변 담당자와 민원인이 심의 회의록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와 별개로 조직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보호원에서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임
- B 위원 : 심의안건에 대하여 각하 의견과 같이 기재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형태로 기각, 각하, 인용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부결은 하고, 부결사유를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함
- A 위원 : 다른 의견으로, 설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연락이 되어 시정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시정권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해당 건은 사이트들이 연계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오히려 시정권고를 하여 숨을 기회를 주면 되지 않을까

음

- 정현순 전문위원 : 구체적인 사안의 득실과 관계없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결 될 사안으로 생각됨  
한편 해당 건은 인터넷웹호스팅사업자가 특정되지 않아 부결된다면, 민원인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A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해당 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알 수가 없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리면 이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생각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보호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함
- B 위원 :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해당건과 같은 기업적인 저작권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보호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C 위원 : 저작권법에 고발조치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함
- B 위원 : 형사소송법은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이러한 의무규정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이 수사하게 하는 등 유사한 방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정리하면 본 건에 3가지 쟁점이 있음  
첫 번째는 불법복제물등을 직접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이고, 두 번째는 성명불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가결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가 본 건과 같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원에 고발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것인지 여부임
  
- 정현순 전문위원 : 해당 건은 사이트명은 특정되지만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므로 각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B 위원 : 해당 사이트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이런 사안에서 보호원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계정에 대하여 계정정지의 시정권고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 업로드가 계속된다면 고발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것처럼 민원인이 신고한 하나의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고발을 하는 프로세스 정립은 어려워 보임
  
- B 위원 :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게시물

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입장 변경을 통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동시에 기업형으로 운영이 되는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에 대해서는 보호원에서 별도 관리하여 모니터링을 한 후 형사고발을 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게시한 불법복제물등이 문제된 과거 심의안건을 살펴보면, 상습,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가능여부를 재논의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임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고의적으로 정보를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인지 질의함
- A 위원 : 해당 사이트는 노출되어 있는 특정 불법 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의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음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부결한 적도 있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위하여 서버공간을 제공 및 관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호스팅사업자가 저장서비스제공자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음  
해당 건은 웹호스팅사업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데, 웹호스팅사업자를

통한 시정권고도 어려운 경우 전체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 이번 사안은 심각해 보임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이번 건과 같이 예외적인 사안은 보호원에 고발요청을 건의하는 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C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해당 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수 있는 주체를 확인 할 수 없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 가능여부, 고의적 영리 목적 전송자에 대하여 수사의뢰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체심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89685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이 명백하고 영리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웹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시정권고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보호원을 통해 수사의뢰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89686호~89707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인 '온디스크'의 이용자 1인이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특정 계정에 대하여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지금 보고 게시는 자료는 모두 민원인이 수집한 것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19-89686호~89707호 웹하드 사이트의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89686호~89707호는 만화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89708호~90854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89937호는 tvN채널에서 2019. 5. 6. ~ 2019. 6. 25. 방

영한 '어비스(2019)'를 모바일용 웹하드에서 제공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90181호는 Ubisoft에서 발매한 '어쌔신크리드 Assassins Creed(2017)' 게임의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사안임

(해당 게임 프로그램 복제물의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한 화면을 보고 계심

안전번호 제2019-90181호는 2019. 7. 12. 발매한 Billie Eilish(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임

안전번호 제2019-90852호는 2019. 7. 21. 발매한 태연(TAEYEON)의 '그대라는 시' 로 방송 중인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OST임

음원의 경우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100개 정도의 최신 곡 음원과 일이 있음

위원님들께 사전에 발송한 검토보고서에서 변경된 안전들이 있음

안전번호 제2019-90853호~90854호는 2019. 5. 30.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의 복제물인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 기존 안전을 변경하게 되었음

- A 위원 : 화면에 인디언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맞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영화 '기생충'의 후반부 장면으로 생일파티를 위해 정원에서 인디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송강호, 이선균 배우임
- B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모두 데드카피하여 전송한 사안들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C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하며 모두 단순 불법복제물이므로 이의 없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9708호~9085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89685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형사고발 조치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건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전번호 제2019-89686호~90854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4. 폐회 선언

-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1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

함

2019년 제1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19.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